

## 단체협약서 합의서

인천광역시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는 단체협약서 제74조(직장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)의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데 합의 합니다.

### 〈신 · 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74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)①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한 괴롭힘 처리 상담원(이하 “상담원”),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) 및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한다. 단,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.</p> <p>②세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방법과 1항에 따른 상담원, 조사위원회, 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별도 규정을 마련한다. 단,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별도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~6.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제74조(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)①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한 괴롭힘 처리 상담원(이하 “상담원”),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)는 <u>직원고충민원 및 직장내괴롭힘 처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</u>에서 <u>심의, 의결한다.</u></p> <p>②세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방법과 1항에 따른 상담원, <u>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직원고충처리 및 직장내괴롭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마련한다.</u> 단, <u>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한 운영</u>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~6. “현행과 같음”</p>

2022. 02. 21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
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 
지부장 이 주 승



인천광역시의료원  
원장 조 승 연

